

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

공보담당관 지청장 오영신
전화 033-371-4301/팩스 033-371-4564

보도자료
2014. 8. 12.(화)

자료문의 : 지청장실
전화번호 : 033-371-4301
주책임자 : 지청장 오영신

제 목

태백 열차 충돌사고 수사 결과

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(지청장 오영신)은 2014. 7. 22. 태백역-문곡역 구간(단선)에서 발생한 열차 정면충돌사고(사망자 1명, 중경상자 93명)를 수사하여, 운행 중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사용하고, 적색신호기·자동정지장치·관제사의 무전교신 일체를 무시한 채 열차를 운행한 O-train 관광열차 기관사를 구속기소하였음

1

사건 개요

1] 피고인

- A○○(구속, 48세, O-train 기관사, 경력 23년)

2] 공소사실 요지

- 2014. 7. 22. 17:49경 피고인은 승객 43명을 태우고 운행중이던 O-train 관광열차를 문곡역에 정차시키고, 태백역에서 문곡역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무궁화호(승객 67명)와 교행하여야 함에도, 적색정지신호와 자동정지장치의 경보음, 관제사의 무전교신을 무시한 채 문곡역을 정차없이 통과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, 마주오던 무궁화호와 정면 충돌함으로써 총 94명의 사상자(사망 1명) 및 예상액 42억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, 약 13시간 46분간 태백선 기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(업무상과실치사상죄,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죄)

③ 수사경과

- 7. 22. 충돌사고 발생 직후 영월지청 검사를 현장에 보내어 사고원인 관련 신속한 증거수집지휘
- 영월지청장을 팀장 겸 주임검사로 한 수사팀을 편성(철도사고 수사 경험 있는 대구지검 검사 1명, 춘천지검 본청 검사 2명이 수사지원)
-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열차운행정보, 전자연동장치, 무전교신 등 증거관계 수집·분석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명백히 하여 사고 일주일 후인 7. 29. 피고인 구속
- 8. 12. 피고인 구속기소

2

수사 결과

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매우 위중한 점을 확인

- 피고인은 열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반 안전장치(관제사의 무전교신, 신호기, 자동정지장치의 경고음)를 모두 무시하고 열차를 운행하여 정면 충돌사고에 이르렀음을 확인
- 태백관제원의 “문곡역 교행”이라는 무전교신 및 적색 신호기를 모두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, 신호기가 적색인 경우 작동하는 자동정지장치의 경보음을 확인하고도 신호기 앞에서 정차하지 아니하였으며, 문곡역 통과시 무궁화호의 교행을 위해 자동전환된 선로전환기를 파손하였음
- 피고인은 ‘무궁화호 열차가 지연된다’는 무전교신을 듣고 태백역에서 교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, ① 무궁화호 열차가 지연된다는 무전교신 자체가 없었고, ② 문곡역 교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호기·자동정지장치 등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였으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오인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

② 피고인의 열차 운행 중 카카오톡 등 휴대폰 사용사실 확인

- 한국철도공사 내부규정은 기관사들의 열차 운행 중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하고 있음에도, 피고인은 열차운행 중 휴대폰을 습관적으로 사용하여 왔음
 - ※ 피고인의 2014년 1월부터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, 피고인은 총 191회의 열차운행 근무 가운데 134회의 운행 중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통화 등 휴대폰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됨
- 피고인은 사고당일에도 17:35경 열차에 승무하여 운행 중, 1인 승무임에도 불구하고 '카카오톡'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함(최종 발신 시각 17:43, 사고 6분전)
 - ※ 피고인은 열차 운행 도중 오른손으로는 운전레버를 잡은 채, 왼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하였다고 진술
- 카카오톡 최종 발신 이후에도 사고시까지 피고인이 휴대폰을 켜놓은 사실 확인(휴대폰의 데이터 사용내역)

③ 무궁화호 기관사, 관제센터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

- 전자연동장치, 열차운행정보기록장치, 유무선 교신 내역을 확보, 분석하여 신호기 및 자동정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사실을 확인함
- 무궁화호 기관사, 구로 및 태백관제사 모두 규정을 준수하였고, 이상 징후 포착 직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'정지'하도록 무전 교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됨

3 이 사건 수사의 의미

①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제고

- 본 건과 같은 정면 충돌사고는 매우 드물고, 다수 승객이 이용하는 열차의 특성상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, 사고원인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, 업무상과실이 위중한 책임자를 엄벌함으로써 대형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

-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업무 담당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반 장치들이 모두 무력화될 수 있음이 확인된 사건으로, 안전업무 담당자의 안전수칙 준수 중요성이 부각된 사안임

2] 검찰의 수사경험 및 역량을 총동원하고, 철도특사경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고원인 및 책임자 규명

- 대구역 철도사고 수사경험 있는 대구지검 검사 1명이 수사팀에 합류하여 초동수사부터 사고원인 규명 및 증거수집에 추호의 의문점도 남기지 않도록 하였고,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(무선교신분석), 춘천지검 본청(신경정신분석 의료자문지원) 등 검찰의 가용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사에 만전을 기하였음
- 철도사고 수사경험 및 철도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철도특사경과 초동수사부터 협조하여 제반사항을 실시간 지휘함으로써 열차운행 정보기록장치, 전자연동장치, 무선교신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.
- 열차기관사의 운행 중 휴대폰사용금지의 제도적 강제방안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에 제도개선 의견 제출 예정. 끝.